

## DDA, 2005년 3월 농업협상 동향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및 정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3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케냐에서 열렸던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열린 3월 특별회의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증가세 상당치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협상 일정은 국내보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나 감축구간의 개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1. 국내보조분야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보다는 당분간 분야별 감축에 집중하여 회원국간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AMS 감축구간의 개수에 대해서는 최근 캐나다가 제안한 3~4개 구간이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세계 AMS 양허 총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EC를 최상위 구간에, 미국과 일본을 두 번째 구간에, 기타 회원국을 한 개 또는 두개의 구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제안은 AMS양허 총액을 절대적 기준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나 일부 회원국들은 생산액 대비 AMS양허 비중 등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AMS 감축 기준은 절대적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형평성 차원에서 상대적 기준 사용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또한 감축방식으로는 선형방식과 조화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Blue Box와 관련하여 G20은 New Blue Box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주장하여 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Blue Box 산출기준인 농업총생산액의 기준 연도는 주로 최근 3개년이나 UR 이행기간 등이 거론되어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품목특정 상한 설정 등 추가 기준 설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들은 de-minimis가 개도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유일한 보조 정책수단임을 강조하면서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AMS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시 선진국보다 더 불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EC, 미국은 기본골격 합의문 para.11에 근거하여 de-minimis 감축도 협상대상임을 지적하며, 개도국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감축은 하여야 한다고 반대하였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는 각국의 보조액을 측정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생산액 통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미통보 국가들의 처리 방안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보조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장은 상대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시장접근 분야에 논의를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 2. 시장접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지난 2월 협상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온 종가세상당치(AVEs) 전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가세 상당치 전환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산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수출국들은 WTO의 IDB 자료에 근거한 수입가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수입가격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둘째, 계산된 수입가격이 일반적인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blips라고 부름)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수입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번 회의에서 주 논의대상이 되었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 대안으로서 인접국가의 수입가격, 인접 세번의 수입가격, 기준 연도를 조정하여 산출하는 수입가격 등에 회원국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면에 수입국들은 IDB 가격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충돌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료 출처별로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은 필터링을 통해서 찾아내어 별도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필터링 방법으로는 미국의 40/20 filtering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이런 blips 처리문제에 대해 집중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기본골격 합의 이후 협상 경과

2004년 10월 이후 농업협상이 재개되어 modality 논의 절차를 협의하고 이어 제반 이슈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개시하였다. 쟁점별 협의 절차로 ① 1차 논의(first reading)를 위한 비공식 전체회의, ②구체적 논의를 위한 기술적 협의(Room D process), ③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소규모 그룹 기술적 협의(Room F process, 15-16개국 정도 참석)의 3단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0월과 11월 회의에서는 TRQ 증량기준, 열대농산물, 품목별 AMS 상한 등에 관한 1차 논의와 Green Box, 종가세 상당치, 수출신용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Green Box와 관련, 케언즈 그룹과 G20은 Green Box가 무역왜곡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현행 Green Box 기준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G10과 EC, 미국 등은 현행 Green Box 기준의 수정은 현행 기준의 검토·명확화까지만 언급한 기본골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종가세 상당치(AVE) 산정 관련, 케언즈 그룹과 G20은 관세간소화(tariff simplification) 문제와 연계하여 향후 비종가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G10과 EC 등은 종가세 상당치 산정은 관세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간소화와 별도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케언즈 그룹과 G20가 2005년 홍콩 각료회의시 modality 타결을 희망하고 있고, 2004년 12월 회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관세감축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시작되는 등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4. 관세감축공식 해설

관세감축공식은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과 EC가 선호하는 UR방식과 미국, 케언즈 그룹, G20이 주장하고 있는 스위스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4.1. UR 방식

UR 농업협상에서는 농산물 전체의 관세를 6년 동안 36% 감축하되, 개별 농산물의 관세는 최소 15%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선진국 기준).

수입국들은 이와 같은 UR방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평균 감축률과 최소 감축률의 값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UR 방식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소 감축률을 만족시키면서 전체 농산물에 대해 설정된 평균 감축률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각 농산물의 관세마다 상이한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신축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각 회원국은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품목의 관세(예: 고율 관세)는 적게 감축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의 관세(예: 저율 관세)는 많이 감축하여 전체 관세의 평균 감축률만 만족시키면 된다.

UR 방식을 사용할 경우 고율 관세 품목의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축 완료 후 개별 품목의 관세율 차이는 조화방식인 스위스 공식을 적용했을 때보다는 커지게 된다.

표 1 UR 방식(감축률 36%)을 이용한 관세감축의 예

	초기 관세율 150%	초기 관세율 125%	초기 관세율 100%	초기 관세율 75%	초기 관세율 50%	초기 관세율 25%	초기 관세율 10%
감축률	36%	36%	36%	36%	36%	36%	36%
감축 1차년도	141.00	117.50	94.00	70.50	47.00	23.50	9.40
감축 2차년도	132.00	110.00	88.00	66.00	44.00	22.00	8.80
감축 3차년도	123.00	102.50	82.00	61.50	41.00	20.50	8.20
감축 4차년도	114.00	95.00	76.00	57.00	38.00	19.00	7.60
감축 5차년도	105.00	87.50	70.00	52.50	35.00	17.50	7.00
감축 6차년도 (최종 관세율)	96.00	80.00	64.00	48.00	32.00	16.00	6.40
연간 감축률	10.80	9.00	7.20	5.40	3.60	1.80	0.72
스위스공식 (계수=25)와의 결과 비교	21.43	20.83	20.00	18.75	16.67	12.50	7.14

주: 개별 농산물 관세를 모두 36%씩 감축한다고 가정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관세율이 높을 경우 UR 방식을 통해 관세 감축을 해도 최종 관세율은 여전히 높았다.

초기 관세율이 낮은 농산물 관세는 감축 후의 최종 관세율이 초기 관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스위스 공식을 낮은 농산물 관세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표 2 참조)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 스위스 공식

UR 공식과 달리 스위스 공식은 낮은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여 감축 완료 후 고율 관세와 저율 관세의 차이를 줄이는 관세 조화방식이다.

스위스 공식을 적용할 경우 높은 관세가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국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관세 감축 이전에 가장 높은 관세와 가장 낮은 관세의 차이가 스위스 공식을 적용한 이후에는 대폭 줄어든다. 또한 감축 이전의 관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감축 이후의 최종 관세율은 공식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최고 관세율 이하에서 결정된다.

표 2 스위스공식(계수=25)을 이용한 관세감축의 예

	초기 관세율 150%	초기 관세율 125%	초기 관세율 100%	초기 관세율 75%	초기 관세율 50%	초기 관세율 25%	초기 관세율 10%
스위스공식 계수	25	25	25	25	25	25	25
감축 1차년도	128.57	107.64	86.67	65.63	44.44	22.92	9.52
감축 2차년도	107.14	90.28	73.33	56.25	38.89	20.83	9.05
감축 3차년도	85.71	72.92	60.00	46.88	33.33	18.75	8.57
감축 4차년도	64.29	55.56	46.67	37.50	27.78	16.67	8.10
감축 5차년도	42.86	38.19	33.33	28.13	22.22	14.58	7.62
감축 6차년도	21.43	20.83	20.00	18.75	16.67	12.50	7.14
연간 감축률	21.43	17.36	13.33	9.38	5.56	2.08	0.48
6년간 총 감축율	85.71	83.33	80.00	75.00	66.67	50.00	28.57
스위스공식 (계수=25)와의 결과 비교	96.00	80.00	64.00	48.00	32.00	16.00	6.40

주: 6년 동안 매년 동일 비율로 감축한다고 가정

$$Z = AX \div (A + X)$$

X : 감축 이전의 초기 관세율

A : 스위스공식의 계수(최고 관세율 또는 관세상한)

Z : 감축 이후의 최종 관세율

감축 완료 후 존재할 수 있는 최고 관세율은 스위스 공식 내에 사전적으로 설정되는데 수식에서 계수인 A가 관세 감축 이후에 존재할 수 있는 최고 관세율 즉, 관세상한(tariff cap)이 된다.

자료 : 외교통상부, 「DDA협상 동향」, 농협중앙회, 「농업통상정보」, 제2005-3호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